

국유 일반재산 대부(임대)절차 안내

우리 공사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 전문관리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대부(임대)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46조 및 제47조

대부방법

원칙 일반경쟁입찰 **온비드**

예외 수의계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51조]

— 주거용, 경작용, 재산 공유자 등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자세한 내용은 웹코 홈페이지 및 법령 참고)

대부기간

•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재산 유형에 따라 결정

20년 이내	10년 이내	5년 이내	1년 이내
조립 목적 토지 및 정착물	시설보수 건물 (대부자 부담)	조립 목적 이외 토지 및 정착물	그 외 재산

대부로

• (산출방법) 재산가액 X 사용요율 (원칙 1천분의 50이상)

10 1000 이상	20 1000 이상	25 1000 이상	30 1000 이상	40 1000 이상
경작 목적, 어업용 육림업	주거용	행정목적 (지자체) 사회복지, 종교	소상공인	공무원 후생

대부계약 체결절차

- 1 대부신청서 제출/접수**
 - 수의계약의 경우 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자 대상으로 대부가능 여부 검토
- 2 대부심사**
 - 낙찰(신청) 물건 및 사용목적 확인
 - 재산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 대부 허용
 - 대부목적과 다른 목적 사용하는 경우 계약 불허 및 낙찰물건의 보증금 국고 귀속
- 3 대금납부**
 - 사용·수익 시작 전 가상계좌 또는 지로를 통한 선납 원칙
 - (잔대금납부)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미납시 낙찰 취소 및 보증금 국고 귀속
 - (연체료) 연체시 최고 연 10%의 연체료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 발생가능(시행령 제72조)
- 4 계약체결**
 - 대부계약시 준비서류
 - (개인)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
 -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출해야 하며, 낙찰물건은 '대부신청서' 제출 생략
- 5 계약서 교부**
 - ※ 우리 공사는 고객편의를 위하여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우리 공사로 방문 없이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출력·보관이 가능합니다.

대부계약 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해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② 사용목적의 변경	③ 대부재산에 시설물 설치
④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⑤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⑥ 대부로 연체 등

※ 국유재산을 불법사용(무단점유, 전대, 용도의 사용 등) 하는 사실을 발견하실 경우, 웹코 홈페이지(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 및 상담전화(☎1899-0096)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